의안번호	제612호	
의 결	2014년 1월 24일	
연 월 일	(제326회)	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4년 1월 20일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 612 제안연월일: 2014년 1월 20일 제 안 자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'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회의 규칙 개정권고'에 따라 「충북도의회 회의규칙」을 일부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함(안 제88조의 2)

- 1)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함.
- 2) 중계방송은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.

나.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신설함(안 제88조의3)

- 1)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)를 대상으로 정함.
- 2) 자치단체장의 시정연설, 공청회, 중요안건의 심의, 예결위의 예산 안 심사 등에 대하여 중계 우선 대상으로 함.
- 3) 영상자료의 인위적 편집을 못하도록 규정함.
- 3. 개정규칙안 : 별첨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 : 별첨

다.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8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다.
 -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8조의3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(공청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,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, 공청회,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, 중요안건의 심의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 -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8조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수 있다.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.
<신 설>	제88조3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 ②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,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, 공청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, 중요안건의 심의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<u>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</u> 다만,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1조(회의규칙) <u>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</u>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국회법 [시행 2013. 8. 13] [법률 제12108호]

제149조의2(중계방송의 허용 등)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(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)에서의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□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[의결 2013. 8. 26] [제2013-293호] (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)
 -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, 각 지방의회별 <u>「회의규칙」에 인터넷</u> <u>의사중계 근거 규정 신설</u>, 기존 회의록 방청 위주에서 탈피 <u>인터넷을</u> <u>통한 의사공개 방안 마련</u>
 -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
 - 현재 본회의 위주로 운영되는 의사중계 범위를 상임위, 특위까지 전면 확대 시행
 -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외에 공청회, 청문회, 행정사무 조사·감사 등 중요 사안을 의사중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

【개정권고 규정 예시】 〇〇의회 회의 규칙

현 행	개 정[안]		
<신 설>	제 ○ 조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망 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.		
<신 설>	제○조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 ②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,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, 공청회, 청문회, 중요안건의 심의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.		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각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생중계 및 녹화 중계를 위한 비용발생
- 회의규칙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관련

2. 사업개요

○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HD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체계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및 녹화방송 중계 장비시스템 구축 비용발생

3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비용추계의 전제
 - 상임위원회 회의 HD디지털 인터넷생방송 및 녹화중계 비용 산출
 - 상임위원회 HD 디지털인터넷 생방송 및 녹화방송장비 구축
 - 각 상임위원회 영상을 외부 기억매체(서버)에 저장 하기 위한 장치
 - 인터넷(PC), 모바일서비스를 확대 구축 실시간방송 및 녹화방송을 볼 수 있도록 화질, 크기 조정 등 편집 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등록

나. 비용 산출 내역

-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생방송시스템 구축: 680,000천원
 - HD인터넷생방송 디지털통합방송시스템 장비 : 305,000천원
 - HD디지털카메라시스템, 멀티뷰어용모니터, 스토리지시스템, HD/SDI매트릭스, 콘솔데스크, 케이블 및 설비자재 등: 375,000천원
- 다. 각 상임(특별)위원회 HD디지털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설치장소
 - 7개 위원회 : 예결특위, 의회운영위, 정책복지위, 행정문화위, 산업경제위, 건설소방위, 교육위
- 라. 재원조달방안 :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(도비)

4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계	1차년도 (2015)	2차년도 (2016)	비고
일반	계	680,000	680,000	-	-
회계 세출	고정비	-	-	-	-
예산	초기투자비 (1차년도)	680,000	680,000	-	-

5. 작성자

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이 병 재